



농약위해경감 및 등록조정분과 회의를 다녀와서

# 위해성경감 및 등록 위한 안전성평가 표준화작업 논의

소면적재배작물용 농약 등록, 농약 등록자료의 전자적 교류방안 등 협의  
2009. 11. 16~20 동경서 개최, 차기회의는 2010. 5. 17~21 파리에서

OECD 농약작업반(Working Group on Pesticide:WGP) 위해경감조정분과(Risk Reduction Steering Group: RRSG) 및 등록조정분과(Registration Steering Group: RSG) 회의가 지난 2009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UN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EC 등 OECD 회원국 9개 국가대표와 비정부기구로 농약제조협회(BIAC), 국제생화학농약제조협회(IBMA), 국제작물보호단체(Crop Life), 농약제조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평가과에서 참여, 주요 이슈인 농약위해경감 관련정책과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등록제도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화분 매개충 감소에 관한 대책 △소면적 재배작물 적용농약 △농약위해성평가의 국제적 표준화작업 △농약등록자료의 전자적 교류 △농약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소요기간 검토 등이 논의되었다.

## 1. 농약작업반 (WGP)

OECD는 1971년부터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도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환경, 보건, 안전프로그램(EHS Programme: 화학물질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국의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좀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의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자발적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통제 특별 프로그램(Part II)」과 환경정책위원회의

「Part I 화학물질 프로그램(Che-mical Programme)」이 상호 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작업반 및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프로그램은 OECD 환경국 환경·보건·안전과(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Division)에 약 30여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7개국이 참여하고 2009년도 예산은 Part I 567천유로, Part II는 1,822천 유로로 우리나라는 Part II 예산에 약 49천유로(2.7%)를 분담하고 있다.

농약작업반 산하에는 농약위해경감분과(RRSG), 농약등록분과(RSG), 생화학농약분과(BSG)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 논의하여 보고를 하고 있다.

농약작업반에서는 농약의 시험, 평가, 등록의 표준화, 회원국간의 작업공유 촉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 위해성 경감 및 최소화 정책 도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를 중점 수행하고 있다.

첫째, OECD 회원국에서 신규 및 기존농약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회원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약등록시 산업계가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상세서류와 OECD 정부들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서식을 만들어서 농약검토의 질과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산업계나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둘째, 해충, 선충 등에 대한 생물학 적방제로 사용되는 미생물제제, 페로몬, Semi-chemical에 대한 도시어스(Dossiers), 모노그래프(Monograph) 지침서를 개발하여 이들 제품의 등록을 촉진하였다.

셋째, 회원국 상호 정보교환, 신뢰성 있는 저감목표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농약의 위해성저감을 촉진하고 회원국의 저감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을 포함하여 보관 및 표시관리, 효과적인 적용기술이용 등 농약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김진배  
농촌진흥청 농약평가과

## 2. 위해경감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가. 농약사용자, 기타 농약관련자의

#### 교육훈련과 허가에 관한 OECD 조사

지금까지의 세미나에서 도출된 훈련, 작업자 안전을 통한 위해경감과 교육자의 교육훈련방법을 개선하였는데 조사결과 농약사용자 대부분이 판매과정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수단으로 국가가 대부분 일반적인 훈련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학술보다는 직업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약의 비산조절과 살포기기의 지식은 사용자, 사회, 환경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규정을 통한 위해경감(농약 실행지침 (BP)개발, 위조 농약과 불법 교역)**

OECD회원국 간의 위험평가과정과 규제 결정에 관한 표준화를 위한 농약실행지침 초안을 재검토하고 회원국간 조화를 위해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각 분야별로 논의할 내용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위험 등을 예상하고 이 때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다. 위해경감과 위해지표 소프트웨어 개발**

D/B 요소인 GIS 데이터(기후, 토양, 토지 이용, 지표수), 물질 데이터 등이 서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기초자료·표로서 사용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게 디자인 되었다. 따라서 2010년말에 새로운 HAIR Toolbox를 완성할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번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육상, 지표수 소비자, 작업자의 위해 지표 설정방향 등이다.

2009~2012년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국가와 다른 활동무대에서 위해경감 활동전략을 창출하기 위하여 논의된 활동계획은 기존의 프로젝트(세미나, 조사)를 근간으로 하고 새로운 위해경감조정분과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위해경감 정책수단과 방법의 신뢰성 제공을 위하여는 조사진행 작업에서 타 국제기구(OECD Group, FAO, WHO, UNEP)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른 그룹과 위해경감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촉진을 위하여 타 국제기구

(IOMC, IFCS, SAICM)와 공동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분야의 동질성확인과 중복회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 농약작업반 위해경감·농약등록조정분과 압동회의**

**가. 화분매개충 감소**

화분매개충감소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보고에 의하면 꿀벌 관련 사고의 관리는 대부분 사후관리 되고 있으며 농약사용자 관리, 정보교환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회원국의 화분 매개충에 대한 독성시험자료 요구는 기존의 OECD 시험연구가 성충과 유충의 아급성 시험으로는 불충분(73%)하여 'EPPO Guidance & test protocol' 이 성충과 유충의 급성독성(경구, 접촉)에 더 적합하며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2010~2011년 'US SETAC Pellson'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화분매개충 감소에 대한 농약등록 관련 논의사항, 매개충감소대책을 위한 라벨표기 사례 수집, 화분매개충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사례수집, 위해경감을 위한 시험관련 정보교환 및 방법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 소면적 재배작물 적용농약**

소면적 적용농약 전문가그룹(EGMU)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약효·약해 조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험자료 경감을 위한 Grouping system 적용국가도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EGMU와 Codex 전자작업반과 합동조

## 농약위해경감 및 등록조정분과 회의를 다녀와서

사를 완료하여 리스트 작업중에 있으며 비 화학물질은 GAP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 4. 농약등록조정분과(RSG)회의

농약등록조정분과회의에서는 피부흡수량 평가를 위한 요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그룹(EGDA)을 구성,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2010년 초에 관련 조문 초안을 작성하여 농약작업반(WGP)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토양잔류성과 생태분야에 대한 지침개발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토양잔류성시험 가이드라인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시험 가이드라인을 2011년까지 개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회원국의 MRL정책과 계산법에 대한 설문문을 분석한 결과 연작작물, 시료채취, MRL 계산법, 작물그룹, 외삽법 등에 관심이 높았으나 농약부재, 자료교환, 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앞서 발표한 Calculator방법에 대한 여러 국제기관과 국가에서 질의가 많았으며, 통계적 접근방법으로서 정책화하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농약자료의 전자적 교류를 위한 등록자료 보고서, 표, 양식 및 평가자료 양식 통일이 시급하여 엑셀 자료화를 의한 통일된 보고서식을 개발하여 2010년 12월까지 표준양식에 대한 모든 OECD회원국의 동의를 차기 농약작업반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농약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기간에 대한

EU의 보고는 작물보호제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기간(EC No 396/2005)은 자료검토보고서 작성(DAR)에 12~18개월이 소요되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Peer Review에 7~13개월, 위원회검토에 6개월이 소요되며 MRL설정 및 등록증 발급에 12~20개월이 소요되어 농약의 등록과정에 정상적 과정에서는 19개월이 소요되며 최악의 경우 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5. 결론

본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의 살포농약 비산에 의한 농작업자, 방관자 등에 대한 위해경감을 위한 안전성평가와 국제적 표준화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농약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평가방법 등의 국제 표준화작업에 관한 많은 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D/B 구축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소면적 재배작물의 그룹화(약효·약해, 잔류성)를 위한 국제잔류농약전문위원회(JMPR) 등 다른 국제기구 및 전문가그룹과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농약작업반 산하 농약등록, 위해경감, 생물농약 조정분과회의에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회의 의제의 사전 검토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여 국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OECD 농약작업반 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Y